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14 선고 2019가단230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 2019. 5. 24.

판결 선고 2019. 6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,578,080원 및 그 중 12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7. 29.부터,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9. 17.부터, 10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9. 24.부터, 각 2019. 4. 12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강하영

별지